



질병관리청

질 병 관 리 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및 기준 안내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질병관리청은 **고위험군 보호**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정부구매하여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('24.5.1.~)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.
3. 최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**처방대상** 관련 문의가 다수 있어, 치료제 처방시 「코로나 바이러스-19 치료제 사용안내서」에 따라,

○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먹는치료제가 필요한 아래의 **처방대상**에 해당하는 **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하여 복용 의사를 확인하여 처방**할 수 있도록 협회 회원 및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 주시길 협조 요청드립니다

※ 본인부담금 부과(5.1.~) 전후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은 변동없으며,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에서만 처방가능

< 팩스로비드 · 라게브리오 >

(처방대상) 치료제 처방 당시, 기준1과 기준2를 충족하는 코로나19 환자

※ 코로나19 환자

- ① 코로나19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확진환자(PCR양성)
- ②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RAT) 결과 양성을 진단받은 사람



○ (기준1)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

- 1. 연령 60세 이상
- 2. 연령12세(팩스로비드) 또는 18세(라게브리오)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
 - (면역저하자) 종양 또는 혈액암,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중인 자, 폐이식 환자 등
 - (기저질환자) 당뇨, 고혈압, 심혈관질환, 만성신장질환, 만성폐질환, 체질량지수(BMI) 30kg/m² 이상,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



○ (기준2) 다음 중 두 가지 모두 충족하는 코로나19 환자

- 1. 증상발생 후 5일 이내
- 2.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

※ 팩스로비드 처방시 병용금지 의약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, 라게브리오는 임부에게 처방하지 않습니다.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시 붙임1의 사용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12판(처방시 참고용) 1부.
2.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안내문 1부. 끝.

질병관리청장

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, 대한의사협회, 대한개원의협회

주무관 **안지원** 보건연구관 **김선자** 서기관 전결 2024. 8. 7.
박지영

협조자

시행 비축물자관리과-595 (2024. 8. 7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 / http://kdca.go.kr
병위기대응국 비축물자관리과

전화번호 043-719-9160 팩스번호 043-719-9199 / ahnjiwon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건강한 동행,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